

「구미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정지원 의원 외 14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에 거주하는 시민이 질병으로부터 평등하게 보호받도록 선택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 수준을 높여 행복한 삶을 누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 대상, 기준(안 제2조~제4조)
-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 및 비용지원(안 제5조~제6조)
- 예방접종 실시기관 및 업무위탁(안 제7조~제8조)
- 예방접종 지원절차 및 지원 중단·환수(안 제9조~제10조)
- 피해보상(안 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
 - 「지역보건법」 제10조, 제11조
 - 「의료법」 제3조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71조
 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부서검토: 감염병관리과 의견제출
-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대상포진과 남성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대상포진 접종 대상의 노인 연령을 확대하고, 남성의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 접종을 지원함으로써 구미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노인사망률 감소와 남녀의 암발생률 감소를 위한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- 추후, 집행기관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확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미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.